

● 제290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9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
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19. 12. 17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이성배 의원 외 9명 발의 】

의안번호 1113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이성배 의원 외 9명 발의
- 나. 제안일 : 2019. 10. 16.
- 다. 회부일 : 2019. 10. 22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 등이 공연장 등의 이용 접근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연장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공연장·관람장 등에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의 설치 규정 신설(안 제5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사항 : 신·구조문 대비표 별첨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 및 개요

- 본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연장 또는 관람장 등에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관람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가. 개정안의 주요내용

-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어의 경사로 등의 설치 조항(안제5조제1항) 신설.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편의시설) (생략) <신설>	제5조(편의시설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공연장 등의 운영자는 공연장 등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.</u>

나. 관련 법령 검토 결과

- 개정 조례 관련 법령인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)은 '18.1.30. 개정을 통해 장애인등이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연장 또는 집회장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.

< 「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」 제4조 >

※ [별표 2]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: 3-가-(14)-(나)

편의시설의 종류	설치기준
(14)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,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	(나) 공연장,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. 다만,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. <2018.1.30. 신설>

다. 조례 대상 기관의 무대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설치 현황

- 현행 조례 (제2조제2호1)에 따른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대상시설은 ‘서울특별시 관리·운영(위탁운영을 포함)하는 공연장, 집회장, 관람장’으로 2019년 10월말 기준 총 14개소임.
- 위 시설들의 무대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,

1) 「서울특별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·운영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2. "공연장 등"이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, 집회장, 관람장 중 서울특별시가 관리·운영(위탁운영을 포함한다)하는 시설을 말한다.

- 총 대상시설 14개소 중 성북 청소년 수련관 외 6개소가 개정 법률을 충족한 시설 설치를 완비하였고, 시립 광진 청소년 수련관 외 6개소가 2020년 시설 설치 예정으로 밝혀 조례 대상시설들은 2020년 내에 법적 기준 및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파악됨.

<조례 대상 시설의 무대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설치 현황>

연번	시설명	개정법령 준수여부	참고사항
1	시립광진 청소년수련관	미설치	2019년 11월 설치 예정
2	성북청소년수련관	설치	
3	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콘서트홀	설치	
4	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 퍼포먼스홀	설치	
5	시립창동문화체육센터 공연장	미설치	2020년 설치 예정
6	목동청소년수련관	설치	
7	세종문화회관	설치	
8	서울 남산국악당	미설치	2020년 설치예정
9	블루스퀘어	미설치	2020년 설치예정
10	삼청각	설치	
11	(문화비축기지T2공연장)	미설치	2020년 설치예정
12	레드박스(플랫폼창동61)	미설치	2020년 설치예정
13	서울 돈화문국악당	미설치	2020년 설치예정
14	삼일로창고극장	설치	

*출처 :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

라.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: 원안동의

-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(장애인자립지원과)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쟁점사항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3 종합 검토 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(「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」(’18.1.30개정)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의 관람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- 단, 상위법에서 무대 경사로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으로 2020.1.29.까지 의무설치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기한 내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설치가 완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판단됨.

< 「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」 부칙 제3조 >

제3조(무대의 경사로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 시설로서 시설주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별표 2 제3호가목(14)(나)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□ 무대경사로 관련 「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」 개정 내용(신설)

○ 개정이유

장애인 등이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장 또는 집회장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○ 주요내용

나.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에서의 경사로 등의 설치(별표 2 제3호가목(14)(나) 신설)
 공연장,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함.

○ 「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」 제4조 및 부칙 제3조

※ [별표 2]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: 3-가-(14)-(나)

편의시설의 종류	설치기준
(14)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,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	(나) 공연장,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. <2018.1.30. 신설>

제3조(무대의 경사로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로서 시설주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별표 2 제3호가목(14)(나)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